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2년 3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1. 12. 31 개정됨에 따라,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등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성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군 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

❍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현행조례 제5조) : 특례제한법 제17조의2

☞ 한센환자가 소유하는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주거용, 부속토지, 축사용부동산 → 재산세 면제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4조) :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9조) : 특례제한법제58조의2

☞ 지식산업센터 승인 받은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 경감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0조) : 특례제한법제85조의2

☞ 지방공사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현행조례제11조) :특례제한법60조제4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 경감,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12조) : 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 경감,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면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현행조례제15조) : 특례제한법제58조제4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산세 50% 경감

나. 기존 조례에서 존치 및 기간 연장한 조항
❍ 안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 자동차세 면제
❍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재산세 면제(2012.12.31.)
❍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문화재지정 및 문화재 보호구역안 부동산 → 재산세 감면
❍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감면
❍ 안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전액 면제(10년), 50% 경감(5년)
❍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농공단지(성주,선남,월항)에 대체입주 부동산→ 재산세 50%감면
❍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용 부동산 → 재산세 면제(5년), 재산세 50% 경감(3년)
❍ 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 자동계좌이체 방식 → 고지서 1장당 : 150원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방식 → 고지서 1장당 : 300원

다. 신설된 조항
❍ 안 제9조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도매사업자 : 재산세 50% 경감
☞ 한국가스공사 : 재산세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2) 관련공문 : 지방세 3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일부개정 공포안 송부 (도 세정과 ~ 91호, 2012.01.0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심　　의

(1) 성주군 지방세 심의위원회(2012.02.17.) 결과 : 가결

(2) 성주군 조례 · 규칙심의회(2012.03.22.) 결과 : 가결

라. 입법예고('12. 02. 20 ~ '12. 03. 12)결과 :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주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 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며,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

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성주 농공단지
2. 선남 농공단지
3. 월항 농공단지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 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 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군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의 세액공제에 있어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 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 중 개별조항에서 적용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